

제406회 임시회

'23. 1. 16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3년 1월 4일

○ 회부일자: 2023년 1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세를 감면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

-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,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나. 감면 내용

- 사망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·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
-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·차량 등 재산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

나. 기타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함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함.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(' 22.10.30.) 된 바,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.
- 이에,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1월, ‘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’¹⁾ 및 ‘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림’²⁾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시행하였음.
- 이에 충북도에서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³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⁴⁾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,
 - 이태원 사고 사망자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임.

1) 「이태원 사고」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(행정안전부, 지방세특례제도과-2488호, 2022.11.2.)

2) 「이태원 사고」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림(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4561호, 2022.11.7.)

3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**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**해당 지방의회의 의결**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4)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

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‘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’에 따른 것으로,
 -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, 그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대상으로,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감면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세를 면제하고,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임.

<감면 지방세 종류 및 내용>

세 목	부과대상	납기	소관 지자체
주민세 개인분*	· 사망자 가족 (개인, 개인사업자) * 지방세법 §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	8월	특광역시, 시·군
자동차세 소유분	·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	6월, 12월	특광역시, 시·군
재산세	·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·주택 등	7월, 9월	시·군·구
지역자원 시설세	· 사망자 가족 (소방분)		특·광역시, <u>도</u>
취득세	·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 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	특·광역시, <u>도</u>

-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으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, 본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사고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.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”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

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” 를 “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” 로 규정하고 있음.

- 먼저, 서울시의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 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나목⁵⁾의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는 답변⁶⁾을 통해 “사회재난” 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바 있음.
- 경기도의 경우, 2015년 사회재난이었던 세월호 희생자·가족에 대한 취득세 및 특정부동산분 등의 지방세 감면동의에 대한 도의회 의결 선례가 있음.
※ 경기도 세월호 희생자·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(2015.5.28., 원안가결)
- 이태원 사고의 경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재난으로, 지난 10월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, 행정안전부에서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시행한 바, “유사한 재해” 에 해당하며,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5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6)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-531(’ 20.3.9)호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 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“사회재난(감염병 등)” 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행정안전부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함.

- 또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에도,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
 -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동의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「이태원 사고」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림
(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4561호, 2022.11.7.)



행정안전부

행 정 안 전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림

1. 지방세정책과-4442(2022.11.1.)호와 관련됩니다.
2. 우리 부는 이태원 사고('22.10.29.)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, 징수유예·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방세정 지원방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,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을 '붙임'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각 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, 시·도에서는 시·군·구에 즉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조치 안내(자치단체 대상) 1부. 끝.

행정안전부장관



수신자 서울특별시(세정과장),세무과장,38세금징수과장,부산광역시(세정정책담당관),세정운영담당관,대구광역시(세정담당관),인천광역시(지방세정책담당관),남세법담당관,광주광역시(세정과장),대전광역시(세정과장),울산광역시(세정담당관),세종특별자치시(세정과장),세원관리과장,경기도지사(세정과장),조세정의과장,강원도지사(세정과장),충청북도지사(세정담당관),충청남도지사(세정과장),전라북도지사(세정과장),전라남도지사(세정과장),경상북도지사(세정담당관),경상남도지사(세정과장),제주특별자치도지사(세정담당관)

주무관	이수호	서기관	홍자은	지방세정책과	전결 2022. 11. 7.
협조자				장	이현정
시행	지방세정책과-4561	(2022. 11. 7.)	접수	세정담당관-12077	(2022. 11. 7.)
우	30116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(어진동, 행정안전부 별관)			/ http://www.mois.go.kr
전화번호	044-205-3814	팩스번호	044-204-8968	/ suholee@korea.kr	/ 비공개

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조치 안내

◆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한 기한연장·징수유예 등 지방세정 지원사항을 안내하고,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

1 지원대상

○ **(대상범위)** 현재 복지부 및 중대본을 통해 집계되어 자치단체로 통보되는 사망자 및 유가족*, 부상자 및 가족*

* 부모·배우자 및 자녀, 그 외 사실상 보호자(세월호 사고, 이태원 사고 감면기준 동일)

○ **(유가족)** 기한연장·징수유예 등 지방세정 지원조치 실시

○ **(부상자)**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부상자 및 가족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 등 필요한 지방세정 지원 조치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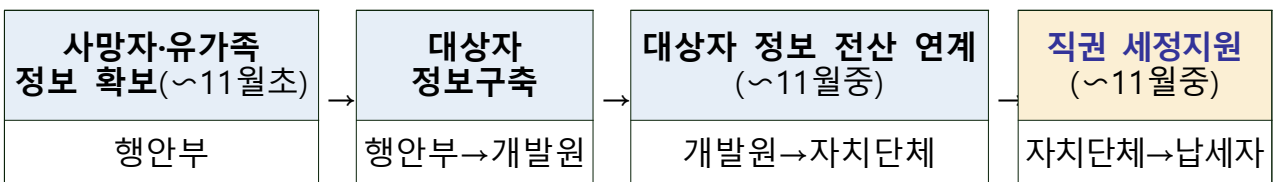
- 부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고, 세부담 경감이 아닌 세정운영 조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근거규정*을 적극적으로 해석

* 근거규정 : 기한연장(「지방세기본법」 §26), 징수유예(「지방세징수법」 §25 등), 체납 처분 유예(「지방세징수법」 §105), 세무조사 유예(「지방세기본법」 §83)

2 조치사항

○ **(유가족)** 각 자치단체로 통보된 사망자 및 유가족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직권으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

※ 유가족 정보연계 완료시 추후 재안내할 예정(11월 중순)



○ **(부상자)** 자치단체장이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시, 납세자보호관 및 세정부서가 협업하여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내용·절차를 안내*

* 현재 중대본을 통해 부상자 주소지 자치단체로 부상자 정보 제공중

※ 「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지원방안 안내」
(지방세정책과-4442호, '22.11.1.)시 既 통보내용

① 지방세 감면

- (자치단체 감면)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재난·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지방세 감면 조치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)

※ (대상 지자체) 사망자 가족이 거주하거나, 그 가족의 재산세·자동차세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

② 지방세 부담 완화 (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)

- (기한연장)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, 납부기한 등을 6개월(최대 1년) 범위 내에서 연장*(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)

* 기한연장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,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

- (징수유예)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(최대 1년)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, 분할고지, 징수유예 등 조치*(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 등)

* 징수유예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,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

- (체납처분 유예)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)

③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

- (세무조사 유예) 사고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직권 등으로 세무조사 연기 가능(「지방세기본법」 제83조)

④ 지방세외수입 부담 완화

- 세외수입 성격별로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,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지원

※ 지방행정제재부과금(체납처분 유예), 과태료·그 외 부과금(납부기한 연장, 분할납부 등)